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3. 2. 21.(화) 12:00 2023. 2. 22.(수) 조간	배포 일시	2023. 2. 21.(화)
담당 부서 <총괄>	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 손재형 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 백경남 (044-202-7563)

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

■ **고물가 · 고금리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여 2월 22일부터 6월까지 체불 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천 5백만원 융자 지원**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,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·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,

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**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**을 **4개월간(2.22.~6.30.) 한시적**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**1천5백만원으로 상향**했다.

*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2천만원 유지

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이다.

* 취업자 증가폭 ('22)+81.6만명 → ('23)+10만명, 실업률: ('22) 2.9% → ('23) 3.2%

❖ "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학 각오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장관들도 어떻게 하면 이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고민해 달라" ('22.2.15.,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, 대통령 말씀)

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**저리로 생계비를 융자**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

임금(퇴직금 포함)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,000만원 범위에서 **연 1.5%의 금리**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.

[참고: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(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8조의12)

ㅇ **(퇴직근로자)** 최종 3개월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(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)

ㅇ **(재직근로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)** 생계비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 임금등(퇴직금 제외) 범위에서 해당근로자가 신청한 금액

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**이자율은 현행 유지로 결정**했다.

「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」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.

[참고: 체불 근로자 융자 신청 시 구비서류]

1. 건설일용근로자: **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**
  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 (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)
   ②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
   ③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
2. 건설일용근로자 외: **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**
  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(재직근로자에 한함)
   ②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(재직근로자에 한함)
   ③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

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"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**고물가·고금리 등을 감안**하여 중소기업·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, **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**"라고 말하며,

"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,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**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**이다.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 손재형 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 백경남 (044-202-7563)
<공동>	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부	책임자	부 장 백민완 (052-704-7321)
		담당자	팀 장 이민영 (052-704-732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

□ 사업 개요

ㅇ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 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

□ 지원 요건

구분	지원 요건
근로자 요건	ㅇ (재직자) 체불 사업장(폐업된 경우는 제외)에서 재직 중 ㅇ (퇴직자) 체불 사업장(폐업된 경우는 제외)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*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
체불 요건	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*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(개별직종노임단가)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('23년 768,355원) 금액 이상이 체불

□ 융자 조건

구분	융자 조건
융자금액	ㅇ (재직자)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(총 1천만원 한도) *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 (퇴직자) 최종 3개월간의 임금(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(총 1천만원 한도)
이자율	ㅇ 연 1.5% 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상환방법	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*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,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

□ 사업추진체계

융자 및 보증신청 (근로자 → 근로복지공단) ▸ 융자 요건 등 심사 (근로복지공단) ▸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 (근로복지공단 →근로자,은행) ▸ 융자신청 (근로자→은행) ▸ 융자금 지급 (기업은행)

참고 2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 /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

소속기관	주소	전화번호
서울지역본부	서울 중구 퇴계로 173, 9층,19층,22층(충무로3가)	02-2230-9784
서울강남지사	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 8~10층(대치동)	02-3459-7182
서울동부지사	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, 14~15층(신천동, 월드타워빌딩)	02-3433-1370
서울서부지사	서울 마포구 백범로 23, 8~11층(신수동)	02-2077-0150
서울남부지사	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, 3층(영등포동2가)	02-2165-3100
서울북부지사	서울 중랑구 망우로 307, 6층(상봉1동, 리베로빌딩)	02-944-8222
서울관악지사	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,(신대방동, 삼성보라매옴니타워) 6층,7층	02-2109-2320
서울서초지사	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, 16층(서초동, 국제전자센터)	02-6250-7212
의정부지사	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-57(금오동)	031-828-3184
남양주지사	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43, 7층 (다산동, 다산타임프라자)	031-524-7010
서울성동지사	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48, 4층(성수동 2가, 거영빌딩)	02-460-3541
부산지역본부	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, 4~9층(초량동)	051-661-0197
부산동부지사	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, 1~3층(부곡동)	051-550-3262
부산북부지사	부산 북구 기찰로 12, 6~7층(덕천동, 이수빌딩)	051-320-8150
창원지사	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4, 2~3층(신월동)	055-268-0103
울산지사	울산 남구 문수로 330, 3~5층(옥동)	052-226-4251
양산지사	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, 3층(석산리)	055-380-8466
김해지사	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466 2, 3층	055-723-8012
진주지사	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, 6~7층(칠암동, 아이비타워)	055-760-0153
통영지사	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9-10, 6,7층	055-640-7106
부산중부지사	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, 12층~13층(부전동)	051-801-4165
대구지역본부	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, 3층, 7~9층(삼덕동2가)	053-601-7310
대구북부지사	대구 북구 원대로 130, 3~4층(침산동, 파크드림갤러리)	053-607-4510
대구서부지사	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, 8~9층(두류동, 감삼빌딩)	053-609-5315
포항지사	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, 2~3층(대잠동)	054-288-5220
구미지사	경북 구미시 백산로 112(송정동)	054-479-9130
경산지사	경북 경산시 경안로 233, 6,7층(중방동, 도륜빌딩)	053-819-2110
영주지사	경북 영주시 원당로 68(휴천동)	054-639-0140
안동지사	경북 안동시 경동로 841, 2층(용상동)	054-850-5440
경인지역본부	인천 남동구 미래로 16, 9층(구월동, 미추홀타워)	032-451-9798
인천북부지사	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, 4층(구산동)	032-540-4521
수원지사	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, 3,4층(정자동)	031-231-4210
화성지사	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, 8,9층	031-547-4777
용인지사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, 1층(마북동)	031-547-3710
평택지사	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375, 7,8,9층(서정동)	031-669-8680

소속기관	주소	전화번호
부천지사	경기 부천시 상일로 124, 7~9층 (상동)	032-650-0357
안양지사	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, 7~9층(안양동)	031-463-0568
안산지사	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, 1~3층(본오동)	031-481-4119
고양지사	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, 4층(마두동, KT건물)	031-931-0910
파주지사	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46 4층	031-934-1210
성남지사	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4, 4~6층(도촌동)	031-720-1240
광주지역본부	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, 8,9,10층(양동)	062-608-0184
전주지사	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, 5층(인후동1가)	063-240-8118
익산지사	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, 1~3층(어양동)	063-839-0131
군산지사	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, 1~3층(장미동)	063-450-0112
목포지사	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, 5층(호남동)	061-240-0113
여수지사	전남 여수시 문수로 125,(문수동)	061-680-0140
제주지사	제주 제주시 연신로 14 (이도2동)	064-754-6750
광산지사	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6, 1층, 10층(우산동)	062-608-0404
순천지사	전남 순천시 백강로 367, 5층(조례동)	061-805-0220
대전지역본부	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, 8,11,15,16,17층 (둔산동, 사학연금회관)	042-870-9241
대전동부지사	대전 동구 옥천로 183, 3층(판암동, 판암퍼스트타워)	042-722-4111
청주지사	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136번길 21 (내덕동)	043-229-5090
천안지사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, 6,7,8층(불당동)	041-629-5171
충주지사	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434(봉방동)	043-840-0342
보령지사	충남 보령시 한내로 27, 1~3층(동대동)	041-939-2212
서산지사	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1035, 오성빌딩 2~3층	041-419-8104
대전서부지사	대전 유성구 반석로 9, 더존타워 7,8층(반석동)	042-820-5447
강원지역본부	강원 원주시 만대로 59-1(무실동)	033-749-2389
춘천지사	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, 7층(석사동, 넥서스 프라자빌딩)	033-240-6182
강릉지사	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17 3층, 4층(포남동)	033-640-9104
태백지사	강원 태백시 황지로 181, 3층(황지동)	033-550-0585
영월지사	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30, KT빌딩 1, 3층	033-371-6120

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방법

인터넷 근로복지넷(https://welfare.comwel.or.kr)

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부 또는 경영복지부 방문

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' Compensation & Welfare Service

붙임 | **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액 확대 인포그래픽**

